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Regulation

FAQ를 통해 알아보는  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

2026.02.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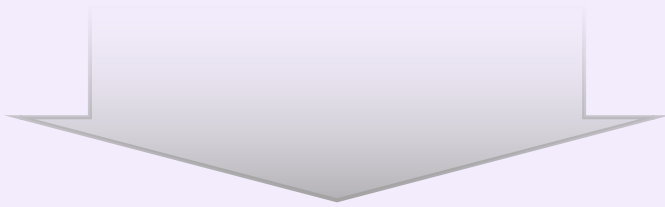
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FAQ를 통해 알아보는  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

## 헛갈리는 감사 적용 시기부터 자금부정 공시까지, 감사위원회가 꼭 확인해야 할 5가지

“신규 상장사 감사의무 유예” 법안 통과여부에 따른 감사 적용 대상 변동과, 올해부터 강화되는 ‘자금 관련 부정위험 공시’ 의무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. .



- 01 | 신규 상장사 감사의무
- 02 | 평가보고 시기 및 절차
- 03 | 자금횡령 관련 부정위험 공시
- 04 |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공시
- 05 | 중요한 취약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고

Source : 금융감독원,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FAQ, 2025.12.23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FAQ를 통해 알아보는  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

## 1. 신규 상장사 감사의무

Q. 자산 규모 5천억 미만의 신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3년 유예되나요?

A. 아니요, '24.9월 외부감사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, '25.12.23 기준 법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.

- ✔ 상장법인(신규 상장법인 포함)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.

📌 상장여부, 자산규모, 개별·연결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·감사수준

	직전연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	K-SOX 개별기준	K-SOX 연결기준
상장회사	2조원 이상	감사	감사
	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	감사	-
	1천억원 미만	검토	-
비상장회사	5천억원 이상	검토	-

✔ 회사의 자산규모와 상장시점을 확인하여 '감사'준비가 되어있는지 경영진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FAQ를 통해 알아보는  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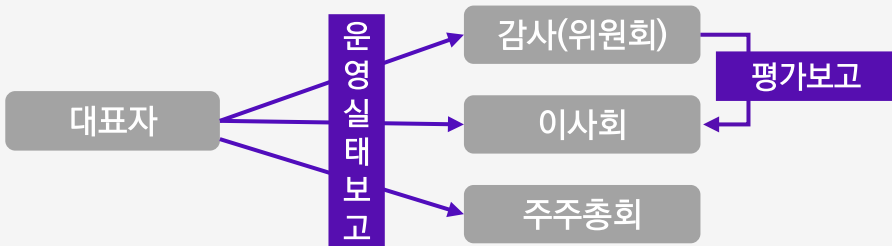
## 2. 평가보고 시기 및 절차

Q.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를 감사(위원회)에 보고하는 일자와 감사(위원회)의 평가보고서의 이사회 보고가 동일자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가요?

A. 보고일자 결정 시 실효성 있는 평가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.

- ✔ 대표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(위원회)에 보고하고, 감사(위원회)는 운영실태보고서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
- ✔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일자 결정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여부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실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지 고려가 필요
- ✔ 감사(위원회)의 이사회 보고일은 대표자의 감사(위원회) 보고일에 선행할 수 없습니다

### 📌 대표자 및 감사(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·평가 보고

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FAQ를 통해 알아보는  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

## 3. 자금횡령 관련 부정위험 공시

Q1. 제조업을 영위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인 회사입니다. 25사업연도('25.1.1~25.12.31)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공시 의무가 있나요?

A. 아니요.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아닌 검토대상이므로 25사업연도에는 기재의무 없으나, 26사업연도부터는 기재의무가 있습니다.

Q2. 금융회사를 제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회사입니다. 결산일을 12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하여 25.1.1~25.2.28, 25.3.1~26.2.28.시작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금부정공시 유예규정이 적용되나요?

A. 네, '25.3.1에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경우 자금부정관련 내부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.

☑ 유예규정은 '25.1.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.

### 📌 자금통제 공시서식의 적용대상과 시기

직전연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	내부회계 감사대상회사	내부회계 검토대상 회사(금융회사 제외하고 자금통제 공시예외 적용가능)
상장회사	자산 1천억원 이상 (2025년 적용)	자산 1천억원 미만(2026년 적용)
비상장회사	N/A	사업보고서 제출대상/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/ 기타대형비상장 (2026년 적용)
		금융회사(2025년 적용)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FAQ를 통해 알아보는  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

## 4.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공시

Q1. 평가보고서 상 「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및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」에 대하여도 유예규정이 있나요?

A. 아니요. 감사(위원회)의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회의 기재에 대해서는 **자산규모와 상관없이** 유예규정이 없으므로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.

Q2. 평가보고서 상 「대면협의 및 의사소통 내역」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?

A. ① 이전연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시정계획의 이행결과 검토내역 ② 경영진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, 그 논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.

### 📌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및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공시예시

구분	일자	참석자	주요 논의내용
경영진	2025.XX. XX	감사위원회: 위원3명 회사: 재무팀장	- 직전연도 운영실태보고서 시정계획 이행결과 검토 -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개선방안
외부 감사인	2025.XX. XX	감사위원회: 위원3명 회사: 업무수행이사 외 1명	-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상황 - 외부감사인 보고내용과 경영진 운영실태 보고내역 비교

# 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FAQ를 통해 알아보는  
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

## 5. 중요한 취약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고

Q. 내부회계관리제도에 ‘중요한 취약점’이 있다면  
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 
포함해야 하나요?

A. 중요한 취약점을 발생시킨 원인부터 징계, 시정조치  
계획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.

### 📌 운영실태보고서

- ✔ 설계 및 운영상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
  - 통제 미비점의 원인
  -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
  -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의 징계내용 등
- 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
  -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포함
- ✔ 직전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, 시정조치계획의 이행결과

### 📌 평가보고서

- ✔ 설계 및 운영상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
- 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
- ✔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및 대안 등



중요한 취약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 
수립한 시정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지,  
단순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는지 평가해야 합니다.